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7. 3. 15.

행정재무위원회

1. 審查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2월 14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7년 2월 15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48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97.3.15)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조남성)

가. 제안이유

-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음.

나. 주요골자

-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의 토요일의 종무시간 및 점심시간 을 정함(안 제13조 및 제16조)
-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함(안 제18조)
- 지참, 조퇴 및 외출 8시간은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 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 근무를 유도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함(안 제21조제3항)
-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풍·수 해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전문위원 : 허영훈)

동조례의 개정은 '96.12.31.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15244호)과 함께 지방공무원의 복무관리도 합리적으로 효율성을 기하고 각급 지방공무원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시달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인사12100-3522, '96.12.31)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복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지참, 조퇴 및 외출 등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한다든지 연가와 병가 일수를 사용하는데 따른 공무원간의 형평성을 감안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의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 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하다고 사료됨.

4. 審查結果 : 원안의 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7
----------	-----

제출년월일 : '97. 2. 14.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음.

2. 주요골자

-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의 토요일의 종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정함 (안, 제13조 및 제16조)
-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함(안, 제18조)
- 지참·조퇴 및 외출 8시간은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 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 근무를 유도하도록 함 (안, 제21조 및 제22조)
-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안, 제21조 제3항)
-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풍·수해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 및 제24조)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 대통령령 제15244호('96.12.31)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증개정령
 - 인사12100-3522('96.12.31) : 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표준안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제16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토요전일근무제) ①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8조중 “근속기간”을 각각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의 본문중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를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로 한다.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제22조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4조제6항중 “근속”을 “재직”으로, “장기근속휴가”를 “장기 재직휴가”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5조 단서중 “1월”을 “30”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영리 업무의 금지”를 “영리 업무 및 겸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 ----- ----- -----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을 13시로 한다.																																				
<신 설>	제16조의 2(토요전일근무제) ① 주민편의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제18조(연가일수) ① ----- 재직기간 ----- -----																																				
<table border="1"> <thead> <tr> <th>근 속 기 간</th><th>연가일수</th></tr> </thead> <tbody> <tr><td>3월 이상 6월 미만</td><td>4일</td></tr> <tr><td>6월 이상 1년 미만</td><td>7일</td></tr> <tr><td>1년 이상 2년 미만</td><td>10일</td></tr> <tr><td>2년 이상 3년 미만</td><td>13일</td></tr> <tr><td>3년 이상 4년 미만</td><td>16일</td></tr> <tr><td>4년 이상 5년 미만</td><td>19일</td></tr> <tr><td>5년 이상 6년 미만</td><td>22일</td></tr> <tr><td>6년 이상</td><td>23일</td></tr> </tbody> </table>	근 속 기 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4일	6월 이상 1년 미만	7일	1년 이상 2년 미만	10일	2년 이상 3년 미만	13일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	19일	5년 이상 6년 미만	22일	6년 이상	23일	<table border="1"> <thead> <tr> <th>재 직 기 간</th><th>-----</th></tr> </thead> <tbody>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body> </table>	재 직 기 간	-----	-----	-----	-----	-----	-----	-----	-----	-----	-----	-----	-----	-----	-----	-----	-----	-----
근 속 기 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4일																																				
6월 이상 1년 미만	7일																																				
1년 이상 2년 미만	10일																																				
2년 이상 3년 미만	13일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	19일																																				
5년 이상 6년 미만	22일																																				
6년 이상	23일																																				
재 직 기 간	-----																																				
-----	-----																																				
-----	-----																																				
-----	-----																																				
-----	-----																																				
-----	-----																																				
-----	-----																																				
-----	-----																																				
-----	-----																																				
<신 설>	<p>②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근속기간의 계산) 제18조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② (생 략) <신 설></p> <p>③ · ④ (생 략)</p> <p>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생 략)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참 또는 조퇴 3회에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신 설></p> <p>제22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p> <p>1 · 2 (생 략) ② · ③ (생 략)</p> <p>제23조 (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1. ~ 7. (생 략) <신 설></p>	<p>제19조(근속기간의 계산) ----- 재직기간 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 ----- ----- -----</p> <p>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 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p>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1일로 계산한다. ③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p> <p>제22조(병가) ① ----- ----- ----- ----- 지참 ·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3조 (공가) ----- ----- ----- 1. ~ 7. (현행과 같음) 8. 올림픽 ·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p>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특별휴가) ① ~ ⑤ (생 략) ⑥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u>근속한</u>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u>장기근속휴가</u>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u>근속기간</u>의 산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⑦ (생 략) <u><신 설></u></p> <p>제25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u>1월</u>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24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u>재직</u> ----- ----- <u>장기재직휴가</u> ----- ----- <u>재직기간</u> ----- ----- ⑦ (현행과 같음) ⑧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제25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 ----- <u>30일</u> ----- -----</p>
<u>제4장 영리업무의 금지</u>	<u>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u>